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13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박균택 · 양부남 · 이성운
김주영 · 한민수 · 박상혁
박홍배 · 황명선 · 박해철
임호선 · 추미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외국인 투자는 단순한 자본 유입을 넘어 국가의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그 성격이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관계기관 또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실효성 있는 안보위험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이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정보원장을 조사

주체에 포함하되 그 권한을 국가안보위해 여부 판단에 한정하고, 조사 대상을 기존의 “투자한” 경우에서 “투자하거나 투자할” 경우까지 확대하여 사전적 예방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심사제도를 보완·강화하고 국가산업 보호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투자한”을 “투자하거나 투자할”로 한다.

②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특허청장, 금융감독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은행총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외국환거래법」 제22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대외무역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은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여부 판단 등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31조 중 “국세청장, 관세청장”을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 관세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p>1. 외국인이 <u>투자한 자금</u>(출자 목적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자본재의 도입·사용·처분에 관한 사항</p> <p>2. <u>삭 제</u></p> <p>3. (생략)</p> <p>③ ~ ⑦ (생략)</p> <p>제31조(권한의 위임 등) 산업통상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u>국세청장, 관세청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의 장</u>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p>	<p>--- <u>다만, 국가정보원장은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여부 판단 등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u></p> <p>1. -----<u>투자하거나 투자할</u> ----- -----</p> <p>3. (현행과 같음)</p> <p>④ ~ ⑧ (현행 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p> <p>제31조(권한의 위임 등) ----- ----- ----- ----- -----<u>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 관세청장,</u>----- ----- ----- -----</p>
---	--